

당의 “언론피해구제법안,” 한나라당의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안,” 언론개혁연대등 시민단체가 입법청원한 “언론피해구제법안,” 그리고 민변과 언론인권센터가 청원한 “언론피해구제법안” 등이다. 5개 법안 중 한나라당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언론보도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 언론중재제도 뿐만 아니라 법적 소송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것이 입법의 주된 목적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법안은 현행 언론중재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만 주안점을 두었다.

기존의 언론중재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서는 한나라당 제출 법안 역시 여당안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언론중재위원의 숫자, 중재위원장의 상임여부, 중재위원의 구성 및 자격,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의 전치절차에 있어서만 다른 4개안과 약간 이견을 보였다. 반면 정간법과 방송법에 구분되어 있던 언론중재 규정을 단일법안으로 만들고, 인터넷언론도 중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중재와 조정을 구분하고, 중재위에 증거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중재결정의이신청을 소송제기로 간주하고, 시정권고제도를 강화하고, 언론사 내에 고충처리인을 두도록 하는 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안, 그리고 시민단체의 입법청원 법안에는 한나라당안과 달리, 언론피해상담소 설치, 언론사 정보공개, 허위과장광고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규제하려는 강력한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야간의 절충을 거쳐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7월 28일부터 발효된다. 언론중재법으로 달라진 중재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정간법, 방송법 등으로 분산된 언론피해구제제도를 단일화함.
- ▶ 인터넷언론도 피해구제 대상으로 포함.
- ▶ 중재와 조정을 구별하여, 중재위의 조정 기능을 명시함.
- ▶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중재위에 조정 및 중재신청이 가능해짐.

1) 열린우리당 김재홍의원의 16인은 2004년 10월 4일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을 수용해, 언론중재법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2004년 10월 20일 문병호 의원 등 150인의 발의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10월 21일 천영세 의원등 10인의 발의로 “언론중재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2004년 11월 24일 정병국 의원의 120인의 발의로 “언론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 ▶조정·중재절차를 필요적 전치절차가 아닌 임의적 절차로 규정.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법원 소제기로 간주함.
-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행위 없이 정정보도청구가 가능함.
-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 및 중재신청이 가능해짐.
-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최대 중재위원 정원을 80인에서 90인으로 증원함.
- ▶중재위원회 운영재원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언론중재법의 제정 배경

지난해 여당이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하자, 한 법조인은 여당이 “한 정파와 일군의 시민세력의 의견만을 집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여당의 입법안을 제안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를 통과시켜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상, 2004)

이러한 진단은 소위 “신문법”에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언론중재법에도 적용하긴 무리가 따른다. 언론중재법은 그 출발점이 신문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시도는 시민운동이나 정파와는 무관하게, 법조계 출신의 언론중재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국회 내에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던 언론중재법의 입법이 가능해진 것은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17대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소위 진보진영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언론개혁입법”의 현실화가 가능해지면서부터였다.

1998년부터 언론중재법 제정을 주장한 법조계 인사는 지난해 말 다음과 같이 법안의 목적을 재차 설명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통합법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거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피해구제방법과 절차를 하나의 법령에 아